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45

2025. 4. 30.(수)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이상정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5년 4월 11일

다. 회부일자 : 2025년 4월 14일

라. 상정일자 : 2025년 4월 22일

-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이상정 의원)

가. 제안사유

○ 지방보조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도지사 보고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 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법령의 조 번호를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일부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조 번호를 변경함. (안 제6조, 제25조)

○ 지방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보고와 관련해 “지체없이”를 삭제함. (안 제19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제출배경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 내 인용 법령의 조 번호를 변경하고, 지방보조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보고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는 등 조례를 정비를 하려는 것임.

- 특히, 현행 조례 제19조의 "지체없이"라는 표현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사전 보고의 의미로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이를 개선함으로써 지방보조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나. 주요내용 검토

○ 법령 인용 조항의 조번호 변경 (안 제6조, 제25조)

- 안 제6조제1항제4호는 신고포상금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 기능에 관한 조항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 번호가 "제25조"에서 "제36조의3"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임.
- 안 제25조제1항의 신고포상금 지급절차에 관한 조항 역시 상위법 개정으로 "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법 제36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로 변경된 인용 조항을 반영하는 것임.
-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법체계의 일관성 및

통일성 측면에서 필요하고 타당함.

○ 지방보조사업 보고 관련 사항 개정 (안 제19조)

- 현행 제19조는, 용어 사용에 있어 조 제목에는 “신고”로 되어 있는 반면, 조문에는 “보고”를 사용하고 있음. 물론 행정상 두 용어의 의미는 동일하게 사용되지만, 현행 조례 제6조에 신고 포상금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바, 도민이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제19조의 조 제목 중 “신고”를 “보고”로 변경함.

> □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제6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4.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
> ※ 신고포상금은 법 제36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 관련 신고 또는 고발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임.

- 또한, 현행 제19조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 내용 변경, 인계·중단·폐지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사업 중단 시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지체없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해당 표현이 행정절차에 따른 사전 보고의 의미로 잘못 해석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및 제15조(지방보조사업의 인계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 변경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에서는 수행 상황 보고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체없이"와 같은 시간적 제약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본 개정은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며, 지방보조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타당함.

현행	개정안
제19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명칭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 2.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3. 그 밖에 법 제14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경미한 내용의 변동이 있을 때	제19조(지방보조사업의 보고) 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1, 2, 3 (현행과 같음)

- 다만, 현재 충청북도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 변경 등”에 관한 범위가 아직 규정되지 않아서 제19조제3호를 적용할 수 없음. 이에 제19조제3호에 따른 보고가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는 규칙 등을 통해 경미한 내용의 변동 범위 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보조사업자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됨.

○ 또한 본 조례안은 법적, 내용적으로 타당하며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절차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음. 다만, 법 제14조에 따른 경미한 내용의 변동 범위 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충청북도 내”를 “도 내”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지방의회”를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25조에”를 “법 제36조의3에”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의거 보조사업자가”를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로 한다.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제2호 중 “법 제16조제5항”을 “법 제16조제4항”으로, “일시정지하였음에도 시정하지”를 “일시 정지하였음에도 이를 시정하지”로, “더 이상 수행을”을 “더 이상 지방보조사업 수행을”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지방보조사업의 신고)”를 “(지방보조사업의 보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를 “경우에는 도지사에게”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를 “법 제36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도비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 내 시·군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은 20퍼센트부터 6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도비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① ---------- ------- 도 내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관한 사항	2.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	4. 법 제36조의3에----------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생 략)	제1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현행 제1항과 같음)
제15조(교부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5조(교부신청) ① ----------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의거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서식, 첨부 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교부방법) ① (생 략)	제17조(교부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원칙적으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예외적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②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2. 법 제16조제4항에 ----------

을 일시정지 하였음에도 시정하지 않아 더 이상 수행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일시 정지하였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더 이상 지방보조사업 수행을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9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지방보조사업의 보고) ① ----------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1.·2·3. (생 략)	1.·2·3. (현행과 같음)
제25조(신고포상금 지급절차) 도지사는 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신고포상금 지급절차) ---- 법 제3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시행규칙) <삭 제>

관계 법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지방보조사업의 인계 등)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4항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36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2.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상호와 주소(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주소를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의 금액
4. 신청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
5. 지방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그 밖에 지방보조금 교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제21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실 관계를 조사한 후 그 처리 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내용을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나 법 제31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 명령이 이루어진 후에 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본문에 따른 포상금(이하 “당초신고포상금”이라 한다)과 달리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당초신고포상금보다 감액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지급할 것
2. 당초신고포상금(50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급할 필요가 있는 포상금의 최소 금액(이하 “최소지급액”이라 한다)을 정하고, 당초신고포상금이 최소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최소지급액을 지급할 것. 이 경우 최소지급액은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⑤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0. 4.]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① 예산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적, 임의적 발생비용에 대한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②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도 주민대표는 비용추계서를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사유

- 본 개정안은 지방보조금 관리에 대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의 조 번호 변경 및 일부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예산 수반 없음.